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90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의자 : 원주영, 한근수, 정현미,
박은경, 김동훈, 이정애,
박윤옥, 이진환, 전해연,
이수련

1. 제안 이유

주취 폭력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한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관내 소상공인 보호 및 사업장 범죄예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나.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6.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상공인 보호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시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생략)</p> <p>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생략)</p> <p>③ (생략)</p> <p><u><신설></u></p>	<p>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소상공인 보호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11조(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시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범죄</u></p>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
다.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
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
로 텔레비전,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및 개
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 제19조 (생략)

제12조 ~ 제20조 (현행 제11조부
터 제19조까지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신설에 따라,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보장 물품 지급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상위법 신설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업 규모·대상·지원범위 등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추계가 어려운 사항임
- 이에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고자 함
-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여부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4. 작성자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중소기업부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부장은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중소기업부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30.]